#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대표 발의)

| 의안 번호 | 2818 |
|---|---|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10월 15일
발 의 자 :김기덕, 강대호, 김기대, 김정환, 김제리, 박순규, 봉양순, 송명화, 송재혁, 송정빈, 유정희, 이상훈, 임종국, 황규복 의원(14명)

## 1. 제안이유

○ 현행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대상에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 및 민원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넣는 경우 등으로 고통 받는 담당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해당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에 공무원을 포함함(안 제2조제4호)

나.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함(안 제15조제4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#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)”를 “(공무원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1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br>1. ~ 3. (생 략)<br>4. “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”란 제2호와 제3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)를 말한다.<br>5.·6. (생 략) | 제2조(정의) ----------.<br>1. ~ 3. (현행과 같음)<br>4. ----------(공무원을 포함한다)----------.<br>5.·6. (현행과 같음) |
| 제15조(금지행위) 고객은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br>1. ~ 3. (생 략)<br><신 설> | 제15조(금지행위) ----------.<br>1. ~ 3. (현행과 같음)<br>4.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 |